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499호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8일
발 의 자 : 최재란 의원
찬 성 자 : 나상희, 서병완, 윤인숙, 박종호, 이수옥, 유영주, 임정옥 의원 (7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자구 정비(안 제1조).

나. ‘적용범위’를 ‘적용대상’으로 문구 변경(안 제3조).

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수립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마. 사회복지사 신분보호을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사회복지사 포상에 대한 사항을 표창 수여까지 확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0. . . ~ 2020.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위향상을”을 “지위 향상을”로 한다.

제3조 중 “적용범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년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중 “사회복지사 등이”를 “사회복지사 등의”로 하고, “포상을 할 수 있다”를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생 략) 1. ~ 3. (생 략)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현 행	개 정 안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